

#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89,101,732	50,673,052
일반회계	1,454,151,150	43,624,535
특별회계	234,950,582	7,048,517
공기업특별회계	172,756,545	5,182,6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108,802	543,2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457,205	1,903,71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1,190,538	2,735,716
기타특별회계	62,194,037	1,865,821
주택사업특별회계	484,465	14,53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174,953	155,2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	3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507,317	75,220
교통사업특별회계	17,614,540	528,43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3,759,107	1,012,77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43,655	79,3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79,3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